

제327회 시의회 정례회

환경수자원위원회

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의 견 서

(유만희 의원)

2024. 12.

정원도시국

정원도시국장 이수연입니다.

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,

정원도시국 소관 사안으로

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

의안번호 제2171호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본 조례안은

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공원이 조성된 후

공원관리청으로 이관 시,

사업준공 전에 공원관리청이 토양 상태 등 시공의

적정성을 확인함으로써 관리 이관 후 발생할 수 있는

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

본 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.

다만, 점검 내용과 시기 등에 대해
관리청의 권한과 사업절차 등을 고려하여
공사 시행 중 토양 등에 대한 사전점검이 가능하도록
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.

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